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관련 세입처리 부적정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○○○○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○○○○과는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도별 세입예산을 편성·관리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·관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보조금 반환수입의 성격에 따른 명확한 구분을 위해 2020년 및 2021년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(223-02), 보조금등 반환금(715)등 예산과목을 신설하였다.

또한 지방세외수입 업무해설집에는 지난년도 보조금 반환금 세입처리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.

참고

지난년도 보조금 반환금 세입처리 방법

구 분				세 입 과 목	
광역 지자체	보조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 받을 경우 (민간단체 보조)	국비	원금	국고보조금등 반환금 715-01	
			이자		
		시도비	원금	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23-02	
			이자	기타이자수입 216-03	
		시·군·구에 교부·정산후 집행잔액을 반납 받을 경우	국비	원금	세입미편성 (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입금)
				이자	
시도비	원금		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223-01		
	이자		기타이자수입 216-03		
기초 지자체	보조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 받을 경우	국비	원금	국고보조금등 반환금 715-01	
			이자		
		시도비	원금	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715-02	
			이자		
		시군구비	원금	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23-02	
			이자	기타이자수입 216-03	

※ 지난년도 국고보조금, 시도비보조금 미사용한 잔액은 712-01, 712-02 항목에서 처리
 ※ 당해연도분 보조금 반환은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(「지방회계법」 제27조 제2항)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○○○○과는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 시 세입과목에 맞지 않게 징수결의 하였다.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○○○○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○○○○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